

2024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

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2024년도에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. 1. 2.

국토교통부장관

1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로 운송되는 철강재 품목에 대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

가. 월 단위 차주 원가

(단위 : 원/월)

품목	고정원가	변동원가	합계
철강재	2,816,465	5,006,756	7,823,221

* (고정원가항목) 차량감가상각비, 차량구입금융비용, 보험료, 번호관부착비용, 지입료, 자동차세, 정기검사비용, 환경개선부담금, 단체·협회비, 세무신고비용, 통신비, 차고지 및 주차비, 숙박비, 사회보험료, 출퇴근비용, 정보망이용료

** (변동원가항목) 유류비, 통행료, 잡유비 및 차량정비비, 타이어비, 세차비, 기타 소모품비

나. 1km 단위 차주 원가

(단위 : 원/km)

품목	단위 원가
철강재	1,033

다. 차주 운송정보

(단위 : km/월, 건/월, 일/월)

품목	월 운송거리	월 운송건수	월 운송일수
철강재	7,571	43.3	22.3

2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모든 품목에 대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

가. 월 단위 차주 원가

(단위 : 원/월)

품목	고정원가	변동원가	합계
1톤 일반형 화물차	885,970	1,056,263	1,942,233
5톤 일반형 화물차	1,376,378	2,473,845	3,850,223
12톤 일반형 화물차	2,310,980	3,963,038	6,274,018
25톤 일반형 화물차	2,618,685	5,444,048	8,062,733

* (고정원가항목) 차량감가상각비, 차량구입금융비용, 보험료, 번호관부착비용, 지
입료, 자동차세, 정기검사비용, 환경개선부담금, 단체·협회비, 세무신고비용, 통
신비, 차고지 및 주차비, 숙박비, 사회보험료, 출퇴근비용, 정보망이용료

** (변동원가항목) 유류비, 통행료, 잡유비 및 차량정비비, 타이어비, 세차비, 기타
소모품비

나. 1km 단위 차주 원가

(단위 : 원/km)

품목	단위 원가
1톤 일반형 화물차	483
5톤 일반형 화물차	623
12톤 일반형 화물차	845
25톤 일반형 화물차	911

다. 차주 운송정보

(단위 : km/월, 건/월, 일/월)

품목	월 운송거리	월 운송건수	월 운송일수
1톤 일반형 화물차	4,023	49.1	21.8
5톤 일반형 화물차	6,183	35.3	21.9
12톤 일반형 화물차	7,426	30.9	22.0
25톤 일반형 화물차	8,849	28.1	22.1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유효기간) 이 고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[별표]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로 운송되는 철강재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모든 품목 대상 안전운송원가 부대조항

1. 운임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아 어음수수료가 발생하였을 경우 실비 정산 방식으로 원가에 포함하여 운임협상 시 활용할 수 있음.
2. 차량구입비용 외 화물운송에 필요한 장비 및 구조변경(유압기, 가변기, 윈바디, 내장탑, 냉동·냉장 장치, 리프트 장치 등) 비용은 원가에 포함하여 운임협상 시 활용할 수 있음.
3. 주연료비는 제시된 톤급별 연비¹⁾와 유가²⁾를 참고 하여 실제 운송 거리에 따른 비용을 운임협상 시 협의할 수 있음.
4.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는 주선수수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.
5.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.

1) (철강재) 2.94km/ℓ, (일반형 화물차) 1톤: 8.6km/ℓ, 5톤: 5.3km/ℓ, 12톤: 3.8km/ℓ, 25톤: 3.1km/ℓ

2) '23.9.1.~'23.11.30. 평균 1,662.02원(한국석유공사 공시 국내 주유소 자동차용 경유 판매가격(부가세포함))